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50
----------	------

2022. 6. 21.(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6월 14일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선미 경제기업과장)

가.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제3조)
- 위원의 임기, 제척·회피·기피 및 해촉 등(안 제4조~제6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및 간사(안 제7조~제9조)
-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대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관하여

-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분쟁의 조정, 조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법 제36조제5항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상위 법률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정책심의위원회(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음
-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도의 도·소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법 제36조제5항에 맞춰 2년으로 정하고, 사임 등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기존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와 제6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의 주요업무인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위원의 이해충돌의 방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7조와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과 위원회의 소집·개의·의결 등 기본적인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 유통산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는 조정의 신청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조정신청은 시·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음

1)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 안 제11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이 유통에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 분쟁조정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대형유통업체의 도내 진출로 인하여 지역 상권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따른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유통분쟁 조정에 관한 심의는 2000년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유통분쟁 조정 기능을 담아 운영했으나,
- 법제처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지자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에 따른 자문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없음”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여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통분쟁을 전담하는 기구로써 해당 분쟁조정에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정 취지 및 내용, 형식의 적절성,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통분쟁에 관한 조정 실적이 없는 점 등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이유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참고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이름뿐인 위원회가 아닌 실효성을 갖춘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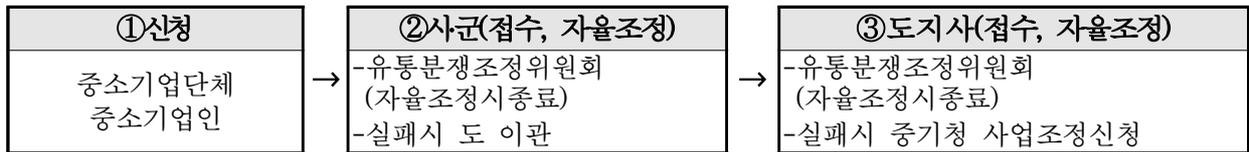
- 폐지일자 : 2019. 6. 7.
- 폐지사유 : 5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폐지)함으로 위원회 관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 방지
- 폐지 후 조치 : 분쟁 발생 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과 달리 유통분쟁 조정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조정이라는 한계가 있어 상위법 개정 건의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유통분쟁조정과 사업조정 비교

■ 유통분쟁조정 ▶ 대규모점포대상 (법적구속력 없는 자율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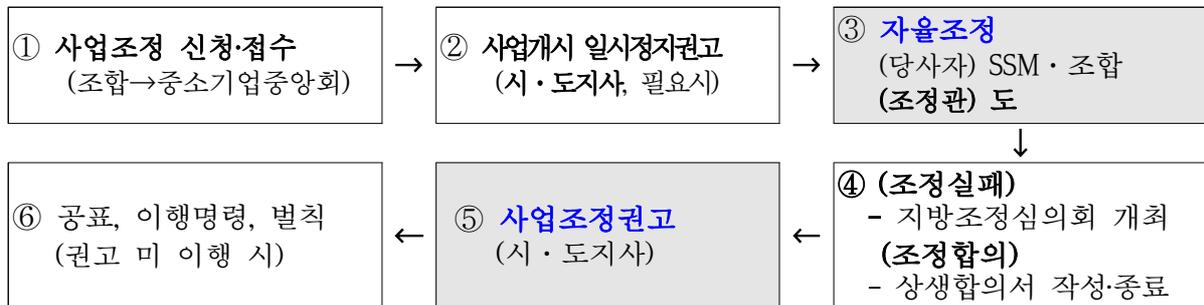
1. 근 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2. 목 적 : 대규모점포대상 생활불편조정(교통,환경 등) 및 중기청 사업조정 전 자율조정
3. 담당/조정기관 : 시·군 및 도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4. 절 차 : ①~③단계의 자율조정단계



5. 운영사례 : 없음

■ 사업조정 ▶ 대규모점포 ⇒ 중소기업청, SSM ⇒ 시·도 (법적구속력 있음)

1. 근 거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1,32,33,34조)
2. 목 적 :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당해 업종 중소기업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경우, 일정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 권고
3. 담당/조정 기관 : 대규모점포 ⇒ 중소기업청, SSM ⇒ 시·도지사 / 사업조정심의회
4. 절 차 : SSM (※ 대규모점포는 중기청에서 사업조정심의회개최 → 시도경유없이 기업에 직접권고)



※ 이행명령 불이행 시 : 법 제41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43조(과태료)에 의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지사 위임)

5. (SSM)운영사례 : '18년 조정권고 1건 (노브랜드 청주북대점) ※ 이후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우리도 및 타지자체의 위원회 운영실적을 봤을 때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들
- 답변 : 향후 분쟁가능에 대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구는 필요한 상황이며, 조례 제정 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북도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과 관련하여 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신청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 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에서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산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0조(조정 신청) ① 법 제37조에 따른 시·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시·군위원회의 조정안
3. 시·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
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 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부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 부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1.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3. 관련조문

- 안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4. 추계결과

- 산출과정
- 협의회 참석위원 연간 수당 : 130,000원*11명*연1회 = 1,430천원
* 출석수당 : 기본수당(2시간 이내) 100천원, 초과수당(2시간 초과) 30천원
- 산출과정 : 연간 1,430천원,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7,150천원 소요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참석위원 수당	7,150	1,430	1,430	1,430	1,430	1,430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사회적경제과장 김 선 희(220-2560)